

해외 파견 한국어 교사 제도와 전망

최 용 기
(문화체육부 어문과)

19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파견(국제 협력 봉사 요원) 한국어 교사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는 외무부가 지난 '94년 1월 법률 제4,715호로 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 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협력 대상 지역에 국제 협력 요원을 파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과 이들 지역에서 우리 나라의 국익 증진 및 해외 국민의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파견되는 한국 해외 봉사 요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복무할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모든 생활비와 활동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원하여 주고 있다. 이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 해외 봉사단'이 따로 있지만,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도표로 비교하였다.

한국어 교사(국제 협력 봉사 요원)가 해외에 파견되는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문화체육부는 외무부와 여러 번의 협의와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국제 협력 요원에 한국어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리를 수없이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파견 국가는 동포 2세~3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구소련 등 중앙 아시아 지역을 고려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병역 의무자 중 지원자 일부를 선발, 한국국제협력단법상의 특정 협력 지역에 국제 협력 요원으로 파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 및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국가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본보기로 삼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중국, 구소련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직접 우리 정부에 요청하거나 고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각국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 정부는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어 교사를 국제 협력 요원으로 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구나 한국 동포 2~3세대들은 거의 한국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분단 50년 이후 남북한 언어 이질화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어문 규범을 다시 배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국·구소련 등 중앙 아시아 지역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무부 관계자는 답변에서 이 법률의 기본 취지가 과거 우리 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을 때 서방 각국에서 파견되었던 평화 봉사단 등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도 저개발 국가를 도와 주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와 국토 건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한국어 교사 해외 파견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파견되는 '한국 해외 봉사단'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 따로 선발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문화체육부는 답변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한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은 문화와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한 스포츠의 교류, 생필품의 무상 지원, 관광을 통한 해외 여행 등 생각할수록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위 선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선결 요소가 한국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의료 행위와 국토 건설 사업은 시간이 지나고, 본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자칫 잊혀질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언어야말로 그 나라 민족혼과 문화 예술 전반을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가르치는 행위 또한 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동포 밀집 지역에 우수한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들에게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우리 한글이 우수하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보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위 선양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없이 많은 논쟁이 오고 가면서 결국 문화체육부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도록 결론이 났고, 우선 시행 1차년도인 1995년에는 의사 10명, 봉사 요원 20명을 선발토록 하고, 봉사 요원 20명 중에는 한국어 교사를 3분의 1을 초과하는 8명을 선발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국제 협력 봉사 요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더욱 늘어날 것이며, 한국어 교사도 가장 우선적으로 증원할 것과 우리 동포 밀집 지역에 우선 파견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 받았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한국 해외 봉사단'에도 한국어 교사를 반드시 파견토록 하고, 1995년도에는 해외 봉사단 100명을 선발하는데 한국어 교사는 21명을 선발토록 하였다. 이제 한국어 교사 파견은 어떤 제도에서나 명분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국력 신장과 함께 세계 각국이 한국어를 배우기 희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적으로 충분히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제도에 의해 선발되는 한국어 교사도 매년 더욱 늘어날 것이며, 한국어 해외 보급도 그 대상 국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 나라에서 파견되는 해외 봉사단 파견 제도를 도표를 통해 비교하여 이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해외 파견 한국어 교사 제도

구 분	국제 협력 요원	한국 해외 봉사단
목 적	특정 협력 지역에 국제 협력 요원을 파견, 국익 증진 및 재외 국민의 후생 복지 증진,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 지원	특정 협력 지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경제·사회 발전 지원
법률 근거	국제 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 (1994. 1. 7/법률 4,715호)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 1. 14/법률 4,313호)
시 행	'95. 1. 1 (모집 공고 '95. 2. 2~3)	'90. 1. 1 -'90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미 착수('95년도 제6 학기 모집)
선발 인원	'95년도 20명(한국어 교사 8명) ※점진적으로 100여 명까지 확대	'95년도 100명(한국어 교사 21명)
파견 지역	중국(4), 인도네시아(5), 필리핀(4), 태국(4), 베트남(3) ※한국어 교사: 중국(4), 베트남(2), 태국(1), 인도네시아(1)	방글라데시, 중국, 튀지,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이디오피아, 파라과이

구 분	국제 협력 요원	한국 해외 봉사단
지원 자격	병역법 제14 조 제1 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국제 협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여권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남녀 ○ 파견 요청국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당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 출입국관리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무 기간	32개월 : 군사교육 1, 직무교육 4 국외 현지 근무 24, 협력 업무 지원 3	28개월 : 직무교육 4, 국외 현지 근무 24
전형 방법	서류전형 (1차), 필기(영어) 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3차) ※ 한국어 교사 :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서류전형 (1차), 필기(영어) 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3차) ※ 한국어 교사 :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복무시 혜택	○ 병역 면제 ○ 현지 생활비, 여비 등 복무에 필요한 경비 지급	○ 현지 생활비 지급, 현지 주거 제공(또는 주거비 지급) ○ 임기 만료 후 국내 적립금 지급 ○ 왕복 항공료 지급 및 제보험 가입
담당 기관	외무부 경제협력 2과 (720-4537)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요원과 (740-5176)	한국국제협력단 봉사사업과 (740-5174)
참고 사항	'95년도 지원서 교부 및 접수 -'95. 2. 4~2. 11 ※ 접수 결과 한국어 교사는 8명 모집에 92명이 지원(11.5 : 1)	'95년도 지원서 교부 및 접수 -'95. 2. 21~3. 4 ※ 접수 결과 한국어 교사는 21명 모집에 222명이 지원 (10.6 : 1)